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451

발의연월일: 2025. 2. 26.

발 의 자: 송옥주·한민수·박해철

황명선 · 윤준병 · 이수진

맹성규・박 정・김남희

한정애 • 이병진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업주가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하는 경우, 통일부장관이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실제적으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기가 어려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가 적어,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북한이탈주민인 사업주인 경우도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, 북한이탈주민 고용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지원 요건을 정비함으로써 해당 제도가 실효성있게 시행되도록 하고자 함(안 제17조의5).

법률 제 호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"을 "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"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 북한이탈주민인 경우
-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17조의5(우선 구매 등) ① 통일 제17조의5(우선 구매 등) ① ----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-----사업주가 다음 각 호 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요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을 모두 충족하는 모범이 되 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 1.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 1.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이탈주민을 고용할 것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 한 경우 이탈주민으로 고용할 것 ② (생 략) ② (현행과 같음)